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월 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가-1  | 30분 이상  | 16,190 | 가-5  | 150분 이상 | 46,970 |
| 가-2  | 60분 이상  | 23,480 | 가-6  | 180분 이상 | 52,880 |
| 가-3  | 90분 이상  | 31,650 | 가-7  | 210분 이상 | 58,930 |
| 가-4  | 120분 이상 | 40,280 | 가-8  | 240분 이상 | 65,000 |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 (원) |
|------|-------------------------|--------|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2,160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4,070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④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
| 라-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1,780 |
|      |                      | 장기요양 2등급 | 47,960 |
|      |                      | 장기요양 3등급 | 44,270 |
|      |                      | 장기요양 4등급 | 42,770 |
|      |                      | 장기요양 5등급 | 41,240 |
|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 라-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4,400 |
|      |                      | 장기요양 2등급 | 59,660 |
|      |                      | 장기요양 3등급 | 55,080 |
|      |                      | 장기요양 4등급 | 53,580 |
|      |                      | 장기요양 5등급 | 52,050 |
|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 라-4  | 10시간 이상<br>~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70,950 |
|      |                      | 장기요양 2등급 | 65,720 |
|      |                      | 장기요양 3등급 | 60,720 |
|      |                      | 장기요양 4등급 | 59,190 |
|      |                      | 장기요양 5등급 | 57,690 |
|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주야간보호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 제 4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개인이 필요하여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서비스내용이 많은 경우.
  - 4)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2. 절차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변경하고 진행한다.

#### 제 6 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보호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보호자 or 보증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⑩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보호자 or 보증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등에 관한 책임의무
-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⑤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